

##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 규정

제정 2017. 9. 1., 명칭변경 2022. 4. 1.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입학사정관실 규정 제7조에 의거 호서대학에서 시행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부종합전형 개발에 관한 사항
2.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3.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관한 사항
4. 학생부종합전형 제출 서류 검증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한 사항

**제3조 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는 입학처장, 입학사정관실장, 전임사정관(교수사정관, 전환사정관, 채용사정관) 및 고등학교 교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된다. (개정 2020. 9. 1.)

②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(신설 2020. 9. 1.)

③ 위원 중 호서대학교 「입학전형교직원의 회피 및 배제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규정된 회피·배제 대상자는 즉시 해촉하며 외부위원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. (신설 2020. 9. 1.)

[제목개정 2020. 9. 1.]

**제4조 (회의)**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 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**제6조 (기타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